

DDA농업협상 1차 초안과 우리의 대응방향

모델리티 1차 초안 내용

DDA농업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관세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DDA협상 1차 초안에서 관세분야(표1-1)는 UR감축방식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 조화방식' (높은 관세는

많이, 낮은 관세는 적게 감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이 비록 67% 수준이지만, 농가 수나 생산 비중에서 주요 품목에 해당하는 곡류나 양념채소류 등 125종은 100%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500% 이상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품목도 10여 종에 달해 국내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주곡작물인 쌀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 관세감축(표1-1)

내용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감축율	90%초과	평균 60%	120%초과	평균 40%	최소 30%
	15~90%	평균 50%	20~120%	평균 33%	최소 23%
	15%이하	평균 40%	20%이하	평균 27%	최소 17%
이행기간		5년		10년	
기 타		전략품목의 경우 평균 10%, 최소 5%			

※ 참고

관세감축 방식	내 용
스위스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낮은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 • 감축 후 최종관세 = (기준관세율×관세율상한)÷(기준관세율+관세율상한)
UR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협상대상 품목의 평균감축률과 품목별 최소감축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신축성을 가지고 관세를 감축해 나가는 방식 • 선진국은 6년간 품목별 최저 15%, 평균 36% 감축 / 개도국은 10년간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 감축

관련이 있는 시장접근물량(표1-2)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출국들이 터무니없이 주장해오던 물량과는 달리 개도국에 대해서는 6.6%까지 상한선을 제시하였고, 특히 전략품목은 증량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지를 남겨두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개도국지위 확보를 관철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

수출·입국간 침해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표1-3)에 대해 농업위원회는 선진국

에 대해서는 추가감축 이행 종료 후 철폐를, 개도국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개도국지위 확보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보조부문(표1-4)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기본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개도국은 기존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축성 있게 인정하고

● 시장접근물량(표1-2)

구분 내용	선진국	개도국
시장접근물량(TRQ)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미만 품목은 10%까지 증가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6.6%미만 품목은 6.6%까지 증가
이행기간	5년	10년
기 타		전략품목(SP)은 증량대상에서 제외

● 특별세이프가드(표1-3)

구분 내용	선진국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G)	추가감축 이행 종료후 철폐	현 SSG지정품목에 추가하여 전략품목(SP)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 보조부문(표1-4)

구분 내용	선진국	개도국
허용보조	기본틀 현행 유지 단, 지급요건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개정 및 항목 추가(검토) - 공공비축제 적용요건 완화 - 식량안보 목적 핵심작물의 국내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보조,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등 새로운 허용보조정책 추가
생산제한 직접지불	5년간 감축률 50% 적용	10년간 감축률 33% 적용
2 안	Blue Box 보조를 AMS에 포함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현행 5%를 5년간 매년 0.5%씩 인하	현행 10%유지
감축보조	감축률 60% 적용	감축률 40% 적용
단서조항	품목별 AMS는 99~01년 평균지 급액 초과불가,인플레이션 고려 가능	
이행기간	5년	10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만 다른 사안들을 감안할 때 가족농이나 핵심 주곡 생산·유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생산제한직접지불이란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UR협상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감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96년경 농업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금은 철폐 입장으로 이윤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1차 초안에서도 개도국에 해당하더라도 10년간 33%의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수출국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최소허용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확보한다면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철폐가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품목들에 대한 보조가 모두 감축보조대상으로 산입되어, 보조금 감축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감축보조에 대한 전망은 실로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한목소리를 내던 EU마저도 55%의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이번 1차 협상 초안 내용대로라면 우리의 제시안보다 3.3%~26.7%까지 감축해야 한다. 결국 2010년까지 이에 해당하는 감축대상보조금은

1조1920억원에 달한다. 쌀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쌀 수매규모를 연간 3.6%씩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정부가 수매규모를 1.3%씩 줄여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감안해 볼 때 감축속도가 지금보다 3배는 빨라지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개도국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하면 쌀 수매보조금을 포함한 감축대상보조금(AMS)을 2004년 1조4900억원에서 2010년에는 5960억원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 수매제도는 물론이고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영도 어렵게 되며, 2004년 쌀 관세화에 유예 재협상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차 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 미국은 이번 1차 초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시장접근분야와 국내보조 분야에 대해 균형이 결여되었다는 평가 외에는 전체적으로 3월31일 합의시한을 앞둔 적시의 초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 EU는 동 초안이 협상 촉진보다 오히려 협상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①시장접근 분야가 가장 심각하고 ②수출보조분야 ③국내보조금의 blue box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초안은 NTC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동물복지, 평화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합의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 일본은 MMA 확대, 선진국의 SSG 일정기간 후 폐지, AMS 삭감에 있어 품목별 지급상한 개념 도입, Blue Box 삭감의무, Green Box 요건 엄격화, 수출보조금간 rule 불균형 등은 많은 국가들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전체적으로 삭감의 수치가 아주 크고 수출국 주장에 편향되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펴고있다.
- 노르웨이는 초안의 급격한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은 노르웨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60%에 달하는 관세 삭감을, 생물다양성, 경관, 식량안보 등 NTC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전체적인 방향은 적절하나 개혁수준은 케언즈그룹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을 하며 시장접근물량의 확대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캐나다는 케언즈그룹의 일원이면서도 낙농품, 닭고기 등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케언즈그룹 국가와는 달리 큰폭의 관세감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총력 투쟁

WTO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여부는 그야말로 국내 농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막중한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의 정세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제대로 협상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UR협상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관세화 수용으로 국제흐름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였으나 “관세화예외”라는 특례조치를 만들어 냈다. UR협상 당시 경제규모를 비교해보더라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쌀 관세화 유예 반드시 관철

쌀은 우리의 주곡작물이면서 다른 작목과는 달리 특별한 민족적 감정이 서려있다. UR협상 당시에도 쌀을 제외한 여타작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수용하면서도 쌀만큼은 관세화 유예를 받아내야 말았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면서 “우리도 쌀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쌀관세화를 수용한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으나, 이번 협상안에서 “고율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율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본도 쌀산업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쌀관세화에 대한 주장은 이번 1차 초안을 통해 완전히 일축되었으며, 수출국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관세감축율을 고려해 본다면 “쌀 관세화 유예”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중요과제이다.

정부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

한농연을 비롯한 400만 농민은 이번 DDA농업협상을 국내농업의 생·사의 갈림길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WTO DDA협상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정도의 협상 의지를 가지고, 오는 3월말 예정된 농업협상 세부원칙 확정시한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제안에 반대할 것을 공식 천명하라.

하나, 정부는 타협을 원칙으로 한 수세적인 ‘DDA협상 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충분한 선대책을 마련 등 세부적인 협상전략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개도국 지위유지’와 ‘쌀관세화 유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전략을 재천명하라.

하나, 이제 이미 DDA협상의 기초가 밝혀진 만큼 더 이상 협상전략의 보안은 의미가 없다.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에게 협상전략 가이드라인과 향후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농연**

향 후 협 상 일 정

○ 3월 중	: Modality 2차 초안 배포
○ 3. 25 ~ 31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Modality확정)
○ 9. 10 ~ 14	: 제5차 WTO 각료회의(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 '03. 9 ~ '04. 12	: 품목별, 정책별 양허협상
○ '04. 12. 31	: 다른 분야와 함께 최종 협상 타결